

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맹진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6월 7일

발 의 자 : 맹진영, 송재형, 문형주,
박호근, 유동균, 김기대,
박진형, 박기열, 성백진,
오승록, 이승로, 성중기,
최웅식, 전철수 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○ 관련법령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근거를 신설해 결산에 관한
의회 승인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근거를 신설함(안 제4조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현행 제4조를 제5조로 하고,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) ①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>제4조(시장의 의무) 시장은 세입·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,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) ①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시장의 의무) 시장은 세입·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,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